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강기춘(제주발전연구원장)

1. 문제제기

세계의 보물섬인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함에 따라 제주의 자연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주의 특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의 특수성이다.

제주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제주도는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지역인데 최근에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관리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섬의 환경오염 문제는 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며(환경의 비배제성),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고(환경의 불가역성),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간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난다(환경의 지역성)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주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논의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 관련 목적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어 왔으며, 중앙정부가 추진했던 적도 있었고 제주도가 추진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인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세원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동 위원회 소속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수렵행위 등 관광자원 및 환경오염 유발 요인 세원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각 지자체에 독자적인 세목과 세율을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과세권’ 도입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 지방재정 자립 기여 여부 불확실성 등에 대한 논의 속에서 도입이 되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박물관, 카지노 입장 행위, 입도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에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로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안’이 검토된 바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측면과 환경보전을 위한 측면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1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 신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동년 12월 31일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무산이 되고, 동 법에서는 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관광진흥기여금을 도입하였다. 관광진흥기여금은 연간 약 40억 원 정도 징수되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2002년 4월에 폐지되었다.

한편,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해 2012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부과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철회되었고, 2013년 (가칭)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연구에서 환경 복원 및 환경 수용 능력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노선 여객기나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초기 징수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소 요율을 1%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제시됨)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 기여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입법을 할 수 없다는 입법 문제의 애로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표 1〉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 관련 목적세 도입 논의 과정

구분	내용
중앙정부	· 지방자치제 도입 초기:1995년 국무총리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 →관광자원 및 환경오염 유발 요인 세원화 방안 등 검토 :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수렵행위 · 참여정부:2005년 ‘제한적 과세권’의 지방 도입 방안 검토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지방재정 자립 기여 불확실 등에 따라 제한적 과세권의 도입 실패 · 이명박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안 도입 검토 →관광행위와 관련하여 검토된 세원은 박물관·카지노 입장행위, 입도 행위 등
제주특별자치도	·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91년)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 신설 포함 →1991년 12월 31일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정· 공포로 무효화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진흥기여금(1991년) → 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관광진흥기여(부가)금을 부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 4월부터 폐지(저비용 관광 활성화 취지)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2012년) →관광객들에게 입도세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부과를 추진하였으나, 철회 · 가칭)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2013년) →제주 방문객에게 ‘환경 기여금’ 징수 방안 추진, 입법 문제로 미 추진 →제주노선 여객기나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설정, 환경 복원 및 환경 수용 능력 확충 자원 활용

2. 외국사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와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특정 지역에만 부과하는 경우와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이 구분에 따라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의 목적세 도입이 나타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도쿄도의 숙박세,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Hotel Room Tax(숙박세)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안내표지의 정비, 관광안내소의 정비, 관광정보의 제공, 관광프로모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도쿄도 법정외세로 호텔, 여관에 부과하였고, 미국네브라스카주의 경우 관광, 스포츠, 복지 등 다양한 공공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

텔, 모텔, 여관 등 상용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둘째,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호주의 Environmental Management Charge(환경부담관리금), 일본 교토시의 고도보전 협력세, 일본 다자이후시의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일본 후지가와구치코정의 유어세 등을 들 수 있다.

호주는 189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산호초 지대인 Great Barrier Reef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Great Barrier Reef에 관한 연구 및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부담관리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 교토시는 환경, 경관보전, 문화시설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절과 신사를 참관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도보전 협력세를 1985년 도입하였다. 일본 다자이후시의 경우 다자이후 천만궁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도로 정체와 소음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일본 후지가와구치코정은 가와구치호의 담수어 낚시 손님의 쓰레기, 주차장 대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1인당 1일 200엔의 유어세를 부과하였다.

셋째,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몬테네그로의 Eco Tax(환경세), 스페인 발레아레스주의 Eco Tax(숙박세), 인도케랄라주의 Entry Tax(입도세), 몰디브의 Green Tax(환경세) 등을 들 수 있다.

몬테네그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급증으로 환경훼손과 대기오염이 증대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 차량의 종류에 따라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고, 스페인의 발레아레스주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외부효과를 교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숙박요금에 관광객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인도 케랄라주는 아름다운 해변과 종교 문화가 조화를 이룬 유적으로 유명한 데 주(州)에 출입하는 관광객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몰디브는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1일 6달러를 부과하여 리조트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의 목적으로 전 지역에 부과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 관련 목적세 도입 사례

구분		국가 및 명칭	내용
관광진흥	특정지역 부과	일본 : 숙박세	· 2002년 10월 도쿄도 법정외세로 도입 (도쿄도 숙박세 조례) · 호텔, 여관에 부과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대책 재원으로 사용
		미국 네브라스카주 : Hotel Room Tax(숙박세)	· 1980년 The Nebraska Visitors Development Act 제정 · 호텔, 모텔, 여관 등 상용숙박시설 부과, 관광 등 공공재원으로 사용
환경보전	특정지역 부과	호주 : Environmental Management Charge(환경관리부과금)	· Great Barrier Reef에 관한 연구 및 보호를 위한 자원 확보 · Great Barrier Reef 방문자에게 세금 부과
		일본 : 고도보전 협력세	· 환경, 경관보전, 문화시설 보호를 위한 자원 확보 · 절, 신사 등 참관료에 세금 부과
		일본 :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 다자이후 천만궁 주변 관광지 정비와 도로 정제 대책 자원 확보 · 유료주차장 : 이륜차 50엔, 승용차 100엔, 대형버스 500엔 등
		일본 : 유어세	· 가와구치호의 담수어 낚시 손님의 쓰레기, 주차장 대책 자원 확보 · 가와구치호 유어권 과세, 1인당 200엔
	전 지역 부과	몬테네그로 : Eco Tax(환경세)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 확보 · 국경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과
		스페인 발레아레스주 : Eco Tax(숙박세)	· 관광활동으로 인한 외부효과 교정을 위한 과세 · 숙박요금에 관광객별 세금을 부과
		인도 케랄라주 : Entry Tax(입도세)	· 관광객 차량 당 출입 시 세금 부과
		몰디브 : Green Tax(환경세)	· 2015년 11월부터 관광객 대상 1일 US \$6 부과, 폐기물 처리 사용

3. 현행 제도 분석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 자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관련 현행 제도는 과세대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세금 부과가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제도로는 관광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들 수 있고, 세금 부과가 소비자(관광객)의 부담이 되는 제도로는 관광호텔숙박세, 구)관광진흥기여(부가)금, 환경기여(부담)금,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제시근거, 부과 대

상, 법 개정 관련, 외국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먼저, 세금 부과가 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관광세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모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외국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세는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 운영 사업장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금 수입범위를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 부과가 소비자(관광객)의 부담이 되는 관광호텔숙박세, 구) 관광진흥기여(부가)금, 환경기여(부담)금,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중 폐지가 된 구)관광진흥기여(부가)금을 제외한 모두 관련 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외국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호텔숙박세는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관광호텔 투숙객에게 숙박요금의 일정률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일본 도쿄도나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사례가 있으며, 환경기여(부담)금은 가칭)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여객선 이용 중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몰디브, 몬테네그로 및 인도의 사례가 있다. 한편,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자연공원법, 문화재법, 관광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호주나 일본의 지자체 사례(유어세, 고도보전 협력세, 역사와 문화의 환경세 등)가 있다.

<표 3>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 목적세 관련 현행 제도 분석

구분	제시 근거	부과 대상	법 개정 관련	외국사례
관광세	이한구 의원 발의 (2014년)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 관광편의시설 운영 사업장	지방세법 개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 수입범위 확대	기금 수입범위를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업으로 확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
관광호텔숙박세	제주미래비전	관광호텔 투숙객	지방세법 개정	일본 도쿄도, 미국 네브라스카주
구) 관광진흥기여(부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4조	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 이용자에 부과	폐지	-
환경기여(부담)금	가칭)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2013년)	관광객 대상으로 항공기, 여객선 이용 중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	관련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몰디브, 몬테네그로, 인도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자연공원법, 문화재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역 재원 확보 (기여금)	개별법 개정	호주, 일본지자체 사례(유어세, 협력세, 환경세)

4. 도입 방안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주 환경자산의 이용자(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기여금으로 정의하고 제주의 환경, 지리적 특수성, 관광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제주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채원 마련 및 사용을 위해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의 환경적 우선보전이 필요한 특수지역에 도입하거나(1안)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도 전체 지역에 도입한다(2안).

1안의 경우 현재 입장료 수준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세계자연유산의 입장료를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명목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고, 기여금을 납부자도 세계자연유산을 관람하면서 보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2안의 경우 기존에 계속 논의해왔던 입도세 개념이다. 이 경우 관광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 논의 시와 비교하여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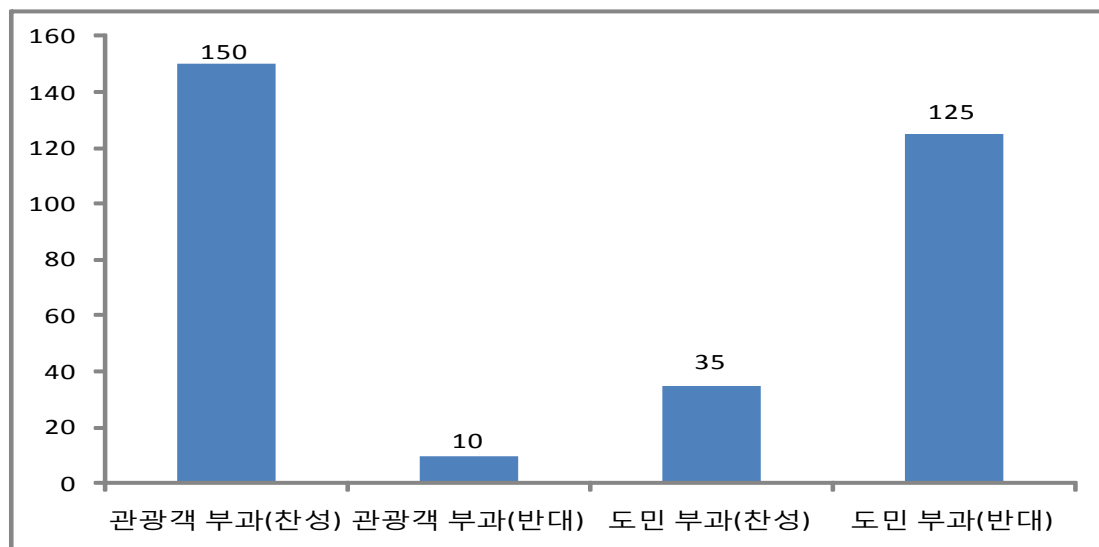
도의회 의원 및 정책자문위원, 대학교수, 언론계,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업종별 대표, 시민사회단체,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도입 여부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그림 1> 참조) 찬성 150명(93.8%), 반대 10명(6.2%)로 나타났는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채원 마련 78명(52.0%),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35명(23.3%), 고품질 관광지로 전환 필요 17명(11.3%), 저가관광으로 제주발전 한계 발생 16명(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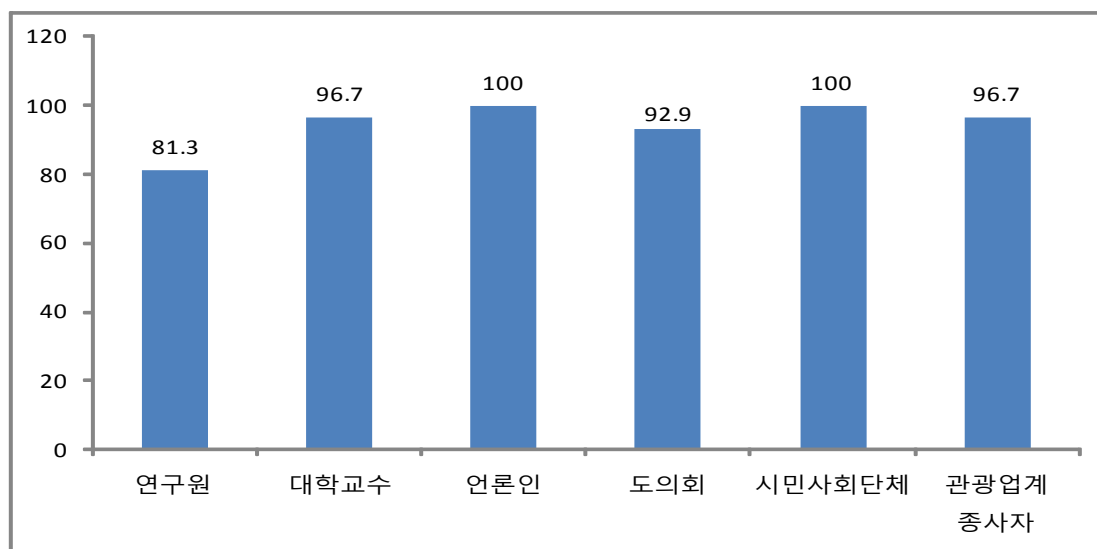
제주도민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반대 125명(78.1%), 찬성 35명(21.9%)으로 나타났는데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주민세 등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63명(50.4%), 관광객으로 한정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 39명(31.2%), 추가 부담해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17명(13.6%),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4명(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직업계층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원의 경우 찬성비중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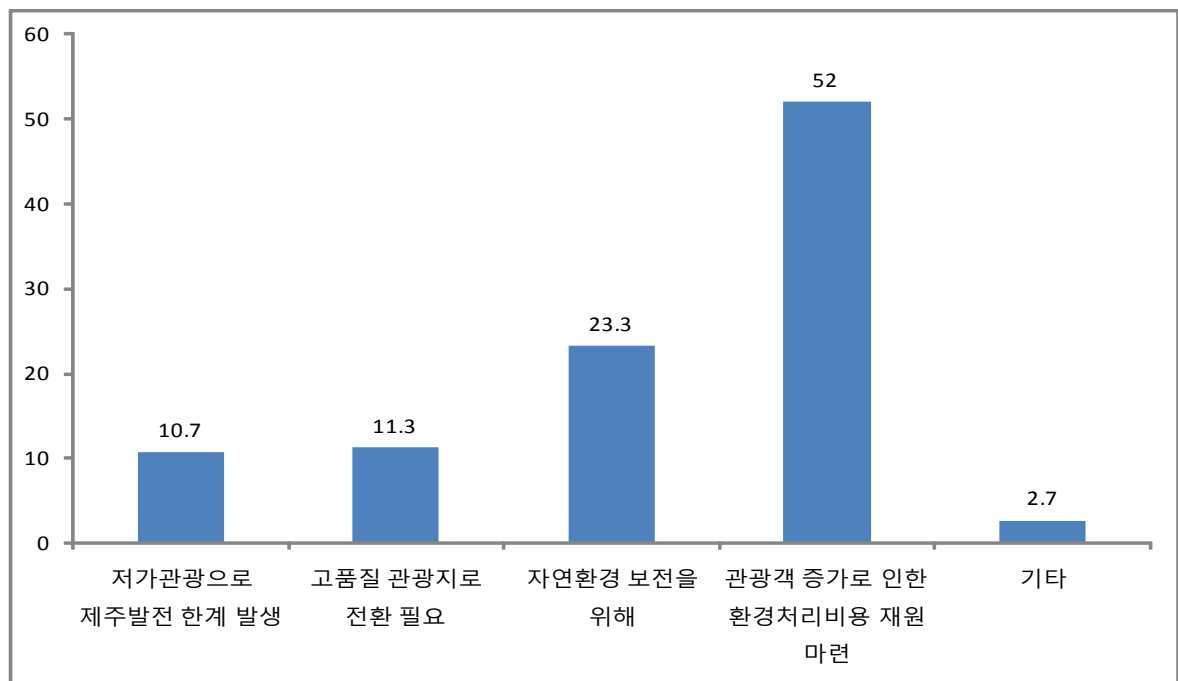
2) 제주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 도입(1안)

탐방예약제 시행 예정 지역인 한라산 5개 코스와 성산일출봉,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지역인 만장굴, 거문오름 등의 방문객에게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수준은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지역 40개소의 평균입장료(2011년 기준)는 24,000원이고, 미국 조슈아 국립공원은 20달러(약 22,000원), 중국 푸다쥬 국립공원의 경우 258위안(약 43,000원), 그리고 일본 후지산은 1,000엔(약 11,000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이유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그림 3> 참조)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재원 마련 78명(52.0%),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35명(23.3%), 고품질 관광지로 전환 필요 17명(11.3%), 저가관광으로 제주발전 한계 발생 16명(10.7%), 기타 4명(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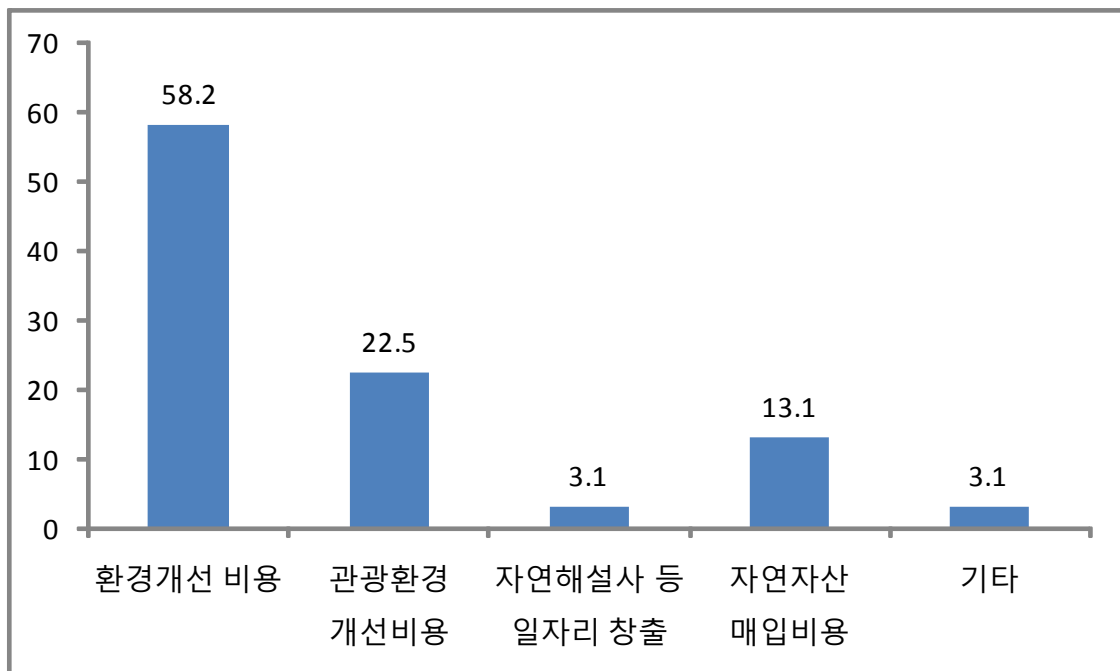


<그림 3>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찬성 이유

② 사용 용도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그림 4> 참조) 환경 개선 비용 93명(58.2%), 관광환경 개선비용 36명(22.5%), 자연자산 매입비용 21명(13.1%), 자연해설사 등 일자리 창출과 기타가 각각 5명(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안의 경우 탐방예약제 시행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의 환경보전 및 복원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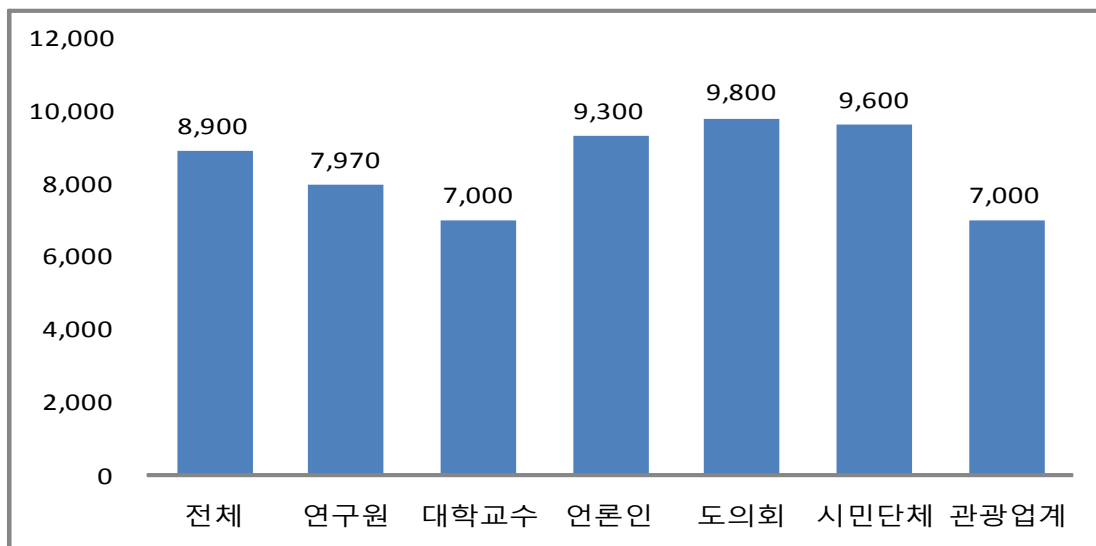
3)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도 전체 지역에 도입(2안)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 방문객 모두에게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재정학회(2010)는 관광세 형태로 2,800원을 제시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2016.5)은 가칭)환경보전기부금 형태로 관광객 1,890원, 도민 1,810원을 제시하였으며, 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2016.7)에서는 환경부담금 형태로 2,000원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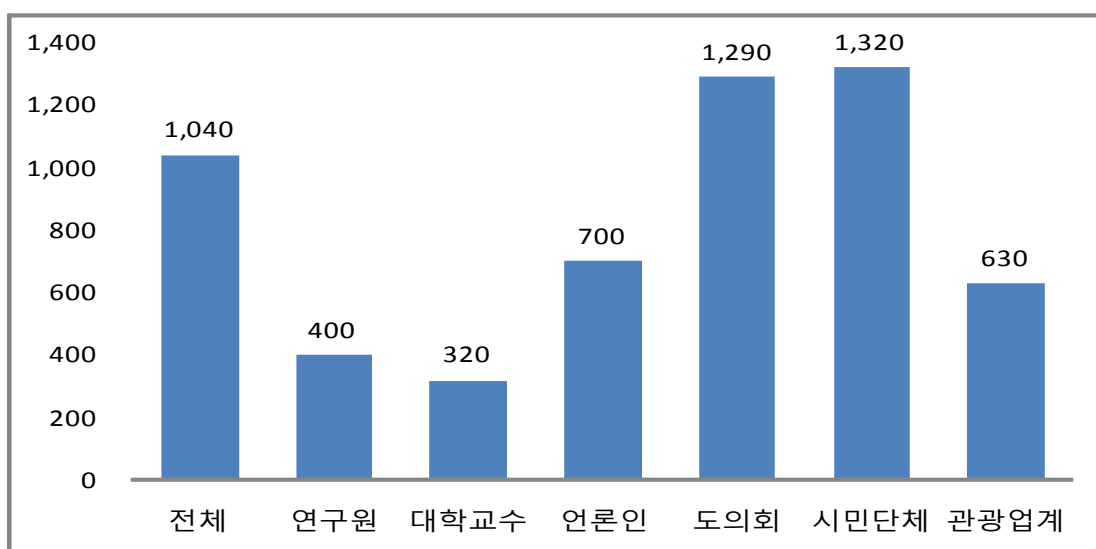
① 부과 수준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그림 5> 참조) 도의회 9,000원, 시민단체 9,600원, 언론인 9,300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수 7,000원, 관광업계 7,000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8,900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관광객 부과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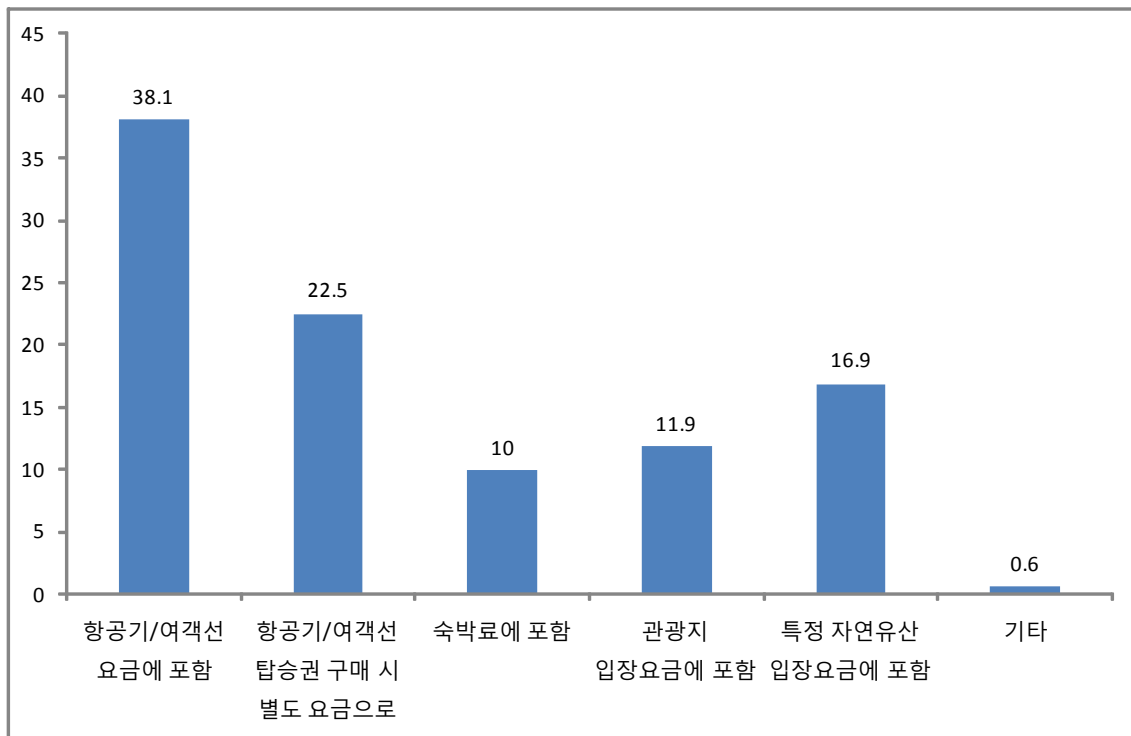
한편, 도민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그림 6> 참조) 시민단체 1,320원, 도의회 1,290원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수 320원, 연구원 400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1,040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도민 부과 수준

② 부과 방법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에 대한 응답 살펴보면(<그림 7> 참조) 항공기/여객선 요금에 포함 61명(38.1%), 항공기/여객선 탑승권 구매 시 별도 요금으로 36명(22.5%), 특정 자연유산 입장요금에 포함 27명(16.9%), 관광지 입장요금에 포함 19명(11.9%), 숙박료에 포함 16명(10.0%), 기타 1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부과 방법

한편, 사용 용도는 2안의 경우 제주 전 지역 환경보전 및 복원, 관광서비스 개선, 문화재 관리 등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맺는말

1991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관광세 신설이 논의 된 이후 25년 시간이 지나갔다. 이러한 논의가 실현되지 못한데 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자인 관광객의 조세저항과 공급자인 관광업계의 반발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가치)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먼저 과거와 달리 도민들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 주고 있고, 도내 관광업계도 과거와 달리 동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정해 주셨고, 최근 제주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동 제도의 도입 환경은 과거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수요자인 관광객을 설득시키고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확실한 논리들을 준비하고, 도민들은 제주도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자들은 제주의 환경오염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어 세계의 보물섬 제주를 지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춘,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가치)제주환경보전기여금을 중심으로-,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6.11.

고태호·임정현, 지방세 신세원 도입의 효율성 분석: 관광세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3권 제1호 통권 제64호, 한국재정학회, 2010.2.

임정현, 환경부담금의 필요성과 적정 부과액 도출 방안, 세계자연유산 제주, 생태관광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서비스 모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토론회, 2016.7.

제주발전연구원, 공영관광지 요금현실화방안 조사용역, 2016.5.